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위험 등급 변경(2등급▷3등급) 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효 력 발 생 일	2024년 03월 22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	위험 등급 변경(2등급▷3등급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2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3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추가	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</p>

		니다.	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-	--	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	위험 등급 변경(2등급▷3등급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2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3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추가	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3.22: 위험 등급 변경(2등급 >3등급) /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/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오기 정정	가. 투자 대상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(이하 생략) 나. (생략)	가. 투자 대상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문구 추가, 위험 등급 변경(2등급 >3등급)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"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		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'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'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21.0520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u>2등급(높은 위험)</u>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3.02.04</u>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'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'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14.0557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4.02.04</u>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3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<p>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☎ 02-2180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aitas.com</u> 나. (생략)</p>	<p>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 나. (현행과 동일)</p>

<끝>.